

100년안심신탁 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고령, 질환 등으로 위탁자의 의사능력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항)

① 이 신탁계약에서 "안심지급"이란 위탁자의 고령, 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능력 부족에 대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하고,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지급청구하거나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신탁재산 전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지급청구대리인의 동의 하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②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지급"이란 위탁자가 고령, 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하고,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 _____ 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 위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고,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조 (생전 및 사후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생전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정한다.

②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사후수익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에서 정하기로 하고, 위 사후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한다.

③ 위탁자는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은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주식에 운용할 경우 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⑤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운용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운용내역 통보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인)
위탁자 :	_____ (인/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 지급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에서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신탁재산 지급청구'를 대리하는 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이하 '지급청구대리인'이라고 함)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급청구대리인은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에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에서 지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으로 한다.

1. 위탁자의 배우자
2. 위탁자의 4촌 이내의 친족
3. 위탁자의 후견인

④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지급청구대리인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안심지급)

①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안심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지급청구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안심지급이 개시된 후,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청구대리인의 동의 하에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안심지급 종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특별지급이 개시되는 경우 그때부터 안심지급은 종료된다.

제11조 (특별지급)

①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특별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개시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청구대리인이 수탁자가 사전에 안내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지급청구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후,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의 생활비 목적으로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의 증명 없이 위탁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후, 지급청구대리인이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증빙서류 작성/발급인(기관에게 증빙서류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1. 위탁자에 대한 병원비 / 간병비 용도

2. 위탁자에 대한 요양시설 입주비 등 요양비 용도

④ 지급청구대리인은 수탁자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특별지급 종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신감정서, 진단서, 소견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⑥ 지급청구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때로부터 '신탁재산 지급청구'에 한하여 위탁자를 대리하고, 그때부터 위탁자의 '신탁재산 지급청구'는 제한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종료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신탁재산 지급청구'를 하고, 그때부터 지급청구대리인의 '신탁재산 지급청구'는 제한된다.

제12조 (위탁자 사망사실의 통보)

① 지급청구대리인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청구대리인 이외에도 제3자가 위탁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급청구대리인 또는 사후수익자에게 그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어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법적 절차)

①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른 소액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원본과 이익의 보존)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을 보존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5조 (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6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7조 (신탁보수)

① 신탁금액에 대한 후회기본보수(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 % x 신탁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제11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 % x 신탁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변경 (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

②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신탁잔액 x () %

제18조 (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5. 그 밖의 날 ()

② 신탁이익의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20조 (중도해지)

① 제4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안심지급이 개시된 경우 수탁자는 지급청구대리인의 동의 하에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연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7조에 정한 신탁보수를 받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괄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말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21조 (일부해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안심지급이 개시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 해지 신청 시 지급청구대리인의 동의 하에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한다.

제22조 (신탁계약의 종료 및 최종계산)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